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 선고 2021가단51533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1.

주 문

1. 피고들과 D 사이에 2019. 8. 9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5,558,700원 및 그 중 15,482,350원에 대하여 2020. 1. 10.부터 2021. 4. 19. 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21. 10. 1.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을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,558,700원 및 그 중 15,482,3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노미정

별지